의 안 번 호	제17호
의결 연월일	2024. 2. 22.

#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4년 2월 13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4년 2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4년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환경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7.20.개정, 2023. 7.21.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,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)에 따라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 내용 추가(안 제5조의2추가)
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